

정관

2021. 5. 2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 관련자"라 한다)로서 본회에 가입된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 관련 피해연구 및 참전국간 교류협력·정보교환 사업과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국가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본부임원,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자는 해임된다.

제4조의2(법률 및 정관 준수 의무) 본회는 고엽제법 및 이 정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엽제관련자 상호간의 상부상조<2020. 8. 18. 개정>
2.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사업
5. 월남참전 기념행사 및 조형물 건립 사업
6. 고엽제관련자 사망자 유족돕기 사업
7. 월남(베트남) 참전국간 교류협력 및 참전지역 내 고엽제 관련 피해연구 및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사업
8. 월남(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및 고엽제관련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전우들의 명예선양과 권리보호사업
9.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에 기여
10. 대국민 안보교육 및 홍보사업
11. 깨끗한 국토보존을 위한 산림사업, 조경, 임목폐기물 재활용, 벌채, 환경감시 및 자연보호 운동
12.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제5조의2(수익사업) ① 제5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고엽제 법령에 따라 운영한다.
- ③ 수익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받고 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익사업 수익금은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산하지부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1. 5. 21. 개정>

제6조(감독) 본회의 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시정지시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은 고엽제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자행한 자

③ 제2항 제3호, 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관리규정 제5장 제18조에 의거 탈회한 회원의 재가입 시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의결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 8. 18. 신설>

제7조의2(준회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제반결의에 따르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에 등록하되 동시에 1개 이상의 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③ 본회의 규정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2년 이 경과된 후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직원으로 임용과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징계)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본부징계위원회와 지부징계 위원회에서 각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대의원을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③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포상) ① 회의 발전과 결속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부 및 지회 또는 회원에게는 대·내외 포상과 추천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발전에 대·내외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 도에 두고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국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 50명 이상 거주하는 국가에는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시 · 군 · 구(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에 두되, 단일행정구역 내 회원의 수가 50인이 안되거나 지회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시 · 군 · 구와 통합하여 연합지회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지부·지회의 명칭 및 위치) 지부·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또는 도 명칭을 쓰되 시·도지부 및 특별자치시 · 도로 한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이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 도의 관할 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소재지에 둔다.
3. 지회는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시·군·구지회로 하고 시·군·구의 관할 소재지에 둔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12조(임원) ① 본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1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명예회장 등 예우) ①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② 직전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에 준하는 의견 상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회장 및 감사 각 2명 중 각 1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직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자격) ①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겸직금지)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권한을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도 유고시에는 비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제20조(이사의 직무) 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1조(감사의 직무)** ① 본회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고 회계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사무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산하조직에 대한 감사
-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참석·발언할 수 있다.
- ④ 본회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연중 시행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특별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 시행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제22조(지부 및 지회)** ① 본회의 지부에는 지부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또는 조직국장 1인을, 지회는 지회장 1인과 사무장 1인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약간의 부서장을 둘 수 있다.
- ② 지부장은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날부터 3년 이상, 지회장은 2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③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라 사임하거나 제9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와 제22조의2 ③항에 따라 해임, 면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임기 중 궐석자에 대한 후임자는 잔여임기로 하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0. 8. 18. 개정>
- ④ 지부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장 또는 조직국장은 지부장이 임면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지회장은 지부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 ⑦ 사무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지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 업무를 관장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사고지부는 관리이사 또는 인접지역 지부장이 겸임토록 회장이 임명하여 지부를 관리토록 하고, 지부의 정상화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⑨ 연임자의 경우 인사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결정한다. <2020. 8. 18. 신설>

제22조의2(결격사항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각급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사면, 복권으로 그 형이 실효된 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있다.
 - ③ 지부장, 지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임 및 면직처리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
 2.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이 있거나 내부의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단체 운영이 곤란 할 경우

제22조의3(직무대행) 제22조의 지부장 및 지회장의 유고에 따른 직무 대행 이외의 직무대행자의 임·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총회

제23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최 14일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전신·전화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14일전에 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한 회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② 대의원의 총수는 60인 이상 90인 이내로 하되 서울·경기지부는 8명, 다른 시·도지부는 각각 5명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1명으로 한다.<2021. 5. 21. 개정>

③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 본회의 회장 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한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 처리가 있을 때

제 6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삭제<2021. 5. 21. 개정>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8. 지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지부장 임·면 추인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위원회) ① 지부와 지회의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부서장,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지부는 지부장이, 지회는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지부는 23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및 시·군·구지회는 13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홀수로 한다. 단, 관할 회원대비 운영위원회 정족수 구성이 어려운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부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서면 또는 통신으로 소집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보고한다.
 - 1.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지부 및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지부 및 지회의 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 5. 삭제<2021. 5. 21. 개정>
 - 6.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예산 및 결산 포함)
 - 7. 기타 중요한 사항
- ⑧ 7항 4호의 안건 중 사안이 긴급한 경우 추인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 제33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임원진이 출연한 재산과 장래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사무실집기 기타 비품 등으로 한다.

④ 재산취득 및 매각의 경우 시·도지부 및 지회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관리규정에 둔다.

제34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2. 후원찬조금 또는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기타수익금
5. 삭제

② 1항 2호의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20. 8. 18. 신설>

제34조의2(수익금) 수익금은 고엽제법 제13조(사업)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금의 사용) 등 법률에 명시된 용도 외에 지분에 따라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2020. 8. 18. 신설>

제35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 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변상책임) ① 본회 및 지부, 지회의 회계책임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밖의 규정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본회 및 지부, 지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 책임자 또는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 책임을 진다.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 책임자 및 직원은 스스로 사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9조(법인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본부, 시·도지부, 지회 및 사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감리를 거쳐 관련법에 의거 결산신고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 보고한다.<2021. 5. 21. 개정>

1.~8. 일괄 삭제 <2021. 5. 21. 개정>

제40조(예산안 편성 및 결산보고)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총회에 부의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기 종료 후 3월31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감사 후 이사회 및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 당해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적립금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 및 행정

제42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산하에 기획실, 복지사업국, 조직선도국, 홍보국, 호국안보국과 구급대를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수의사업 법인을 둘 수 있다.

④ 본회는 뇌경색증 등 응급환자가 수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단체로 본부 및 지부, 지회에 환자후송을 위해 긴급차량인 구급차량 운영을 위한 구급대를 운영한다.

⑤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임원 및 직원 보수) ① 본회의 상근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급여 내지 복지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한다.

제44조(지부사무소설치등기 및 사무소이전등기의 보고) 「민법」 제50조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부사무소설치 등기 또는 사무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해산 및 신고)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25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총회 구성원 재적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1. 고엽제법에 따른 설립목적이 소멸되었을 때
2.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을 때

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사유
3. 해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③ 청산인은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록<2020. 8. 18. 개정>

④ 본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산예정일, 해산의 원인,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 당시 정관 1부

제46조(해산 후 재산정리)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증여토록 한다.

제47조(환경보호) 제5조제11호의 깨끗한 국토보존을 위한 환경감시를 위하여 본회에 환경감시단을 두고 환경감시활동과 자연 보호운동을

수행토록 하고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보칙

제49조(인장) ① 본회가 사용할 인감과 직인의 모형은 붙임 규격과 같이한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직인은 등록된 직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인장 분실 시 일간지 또는 지방지에 분실 공고 후 본부에 즉시 보고하고, 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부는 지부장, 지회는 지회장이 책임자가 된다.

제50조(규정)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고엽제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없이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준수)
본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8월 14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본회 명칭 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로 변경 승인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고, 단서사항은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2월 1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본회 명칭 대한 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변경 승인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 까지로 하고, 단서사항은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2008. 4. 18)

- ①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고, 제12조제2항을 적용한다. <2017.04.21. 오류 정정>

부 칙(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선출 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되, 제1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2010. 4. 22.)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1.)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1.)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6.)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7.)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임원)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한 연임 임원의 중임은 현 회장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

부 칙(2016. 5. 27.)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5.)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2.)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9.)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5.)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3항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지부(회)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부 칙(2021. 5. 21.)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